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나15084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

 2. ○○○

 3. ○○○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10. 4. 선고 2005가단1542 판결

변 론 종 결 2006. 6. 16.

판 결 선 고 2006. 8.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7,142,857원, 원고 ○○○, ○○○에게 각 금 1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은 2002. 5.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7. 5. 20.까지로 정하여 ○○○이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은 2004. 4. 8. 19:30경 집을 나가 소식이 두절되었다가, 2004. 4. 12. 16:2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포항개인택시 엘피지 충전소 앞

의 형산강 물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 ○○○은 ○○○의 남편이고, 원고 ○○○, ○○○은 ○○○의 자녀들이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들의 상속지분(원고 ○○○ : 3/7, 원고 ○○○, ○○○ 각 2/7)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주장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은 스스로 형산강에 뛰어 들어 자살하였던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2조, 제5조에 피고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고(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면책사유로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4, 7, 8, 10, 11, 을 제1호증 1, 4, 5, 6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남편과 함께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금 240,000,000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가출하던 날은 위 정비공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왔던 ○○○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슬프다며 혼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신 후 집을 나갔던 사실과 ○○○의 발목에 흙이 묻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강물 속에 뛰어 들어 자살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라. 그러나 통상 자살을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 고립, 외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자살에 이르는 동기나 이유가 있고, 자살을 유발할 유전적, 기질적, 환경적 요인이나,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병력이 있으며, 자살 이전에 자살 기도 경력이나 자살하기 직전 무렵에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등의 직·간접적인 경고 또는 위험신호를 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유서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데, ○○○에게 위와 같은 자살의 동기나 이유, 원인이나 징후 또는 유서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4 내지 11,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평소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인 ○○○과 통화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다며 농담을 건네기까지 하였던 사실, ○○○의 신발은 ○○○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형산강 하류로 약 200m 정도 거슬러 내려간 지점에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자살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보험금 17,142,857원(금 40,000,000×3/7), 원고 ○○○, ○○○에게 각 보험금 11,428,571원(금 40,000,000원×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04.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05. 2.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_____

 판사 이효진 _____

 판사 도훈태 _____